

1. 개정이유

직무수행 중 받은 국외표창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 시 상점을 인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경찰업무와 관련있는 공적으로 외국정부기관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국내표창 훈격에 준하여 상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 포상 등 평가기준 비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기관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국내 표창 훈격에 준하여 해당 표창의 상점을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칙 별표1 제2호의 비고 제8호는 이 개정규칙 시행 이후 받은 표창부터 적용한다.

[별표1]

제1평정요소 평정기준(제7조제3항제2호 관련)

2. 포상 등 평가기준

구분	상		별	
	훈격 구분	점수	징계·경고 구분	점수
가. 개인	훈장	20	<징계>	
	포장	15	강등	30
	대통령 표창	12	정직 3개월	25
	국무총리 표창	7	정직 2개월	20
	경찰청장 및 각 부처 장관(장관급 공무원 및 처장을 포함한다), 검찰총장 표창	5	정직 1개월	15
			감봉 3개월	10
			감봉 2개월	8
	각 청(廳)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특별검사,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군사령관 표창	4	감봉 1개월	6
			견책(영창·근신을 포함한다)	4
	경찰대학장·경찰인재개발원장	3	<경고>	
	·중앙경찰학교장·경찰수사연수원장·경찰병원장·지방경찰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시·도 교육감·지방검찰청검사장·군단장(교육사령관을 포함한다) 표창		경찰청장	
			- 불문경고	2
	101단장·기동단장·경찰서장·사단장 표창	2	- 직권경고	1
기동대장·여단장·지방검찰청지청장 표창	1.5	경찰대학장·경찰인재개발원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수사연수원장·경찰병원장·지방경찰청장		
의무경찰중대장·연대장 표창	1	- 불문경고	1	
		- 직권경고	0.5	
		경찰서장·기동단장·의무경찰중대장·기동대장		
		- 불문경고	0.5	
		- 직권경고	0.25	
나. 단체	상			
	훈격 구분	수여받는 단체 (유사 단위 단체 포함)		점수
	대통령 표창	계·팀		6

		과	3
		경찰서	2
국무총리 표창		계·팀	3
		과	2
		경찰서	1.5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 표창		계·팀	2
		과	1.5
		경찰서	1
지방경찰청장·경찰대학장·경찰인재개발원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수사연수원장·경찰병원장 표창		계·팀	1.5
		과	1
		경찰서	0.5
경찰서장·101단장·기동단장 표창		계·팀	1
		과	0.5

※ 비고

1. 상 점수 합계에서 별 점수 합계를 뺀 점수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환산하여 평정 점수로 하되, 최고점수는 9점, 최하점수는 0점으로 한다.
 - 가. 경정·경감: 12분의 9
 - 나. 경위·경사: 11분의 9
 - 다. 경장·순경: 10분의 9
2. 상 점수 및 별 점수는 현재 재직 중인 계급에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상 점수를 받은 경우 승진임용예정 계급의 상 점수에 포함한다.
3. 표창 제도와 운영 목적 또는 방식이 유사하여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1.5점의 범위 내에서 상 점수를 인정할 수 있다.
4. 군의 표창은 통합방위작전, 경찰 행정발전 업무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공로로 받은 표창에 대해서만 상 점수를 인정한다.
5. 군의 표창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기관장의 표창은 경찰업무와 관련된 공로로 받은 표창에 대해서만 상 점수를 인정한다.
6. 단체 표창을 받은 경우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포상에 대해서만 그 소속원에게 상 점수를 인정한다.
7. 단체 표창을 수여받는 단체의 유사 단위 단체는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8.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기관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국내 표창 훈격에 준하여 해당 표창의 상점을 인정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담당관	
연 락 처	(02) 3150-2831